
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(윤종오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2534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8. 29.

발 의 자 : 윤종오 · 전종덕 · 정혜경
김준형 · 박은정 · 용혜인
김재원 · 손 술 · 허성무
정춘생 · 한창민 · 최혁진
황운하 의원(13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헌법 개정 과정에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「국민참여 개헌절차법」에 따라 국회에 설치하는 ‘헌법개정특별위원회’의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고자 함(안 제45조의2 신설).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윤종오의원이 대표발의한 「국민참여 개헌절차법안」(의안번호 제12533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
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5조의2(헌법개정특별위원회) ① 헌법개정 방향 논의, 헌법개정안 기초안 작성 등 헌법개정에 필요한 사항과 헌정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둔다.

② 헌법개정특별위원회의 위원 수는 50명으로 한다. 이 경우 의장은 국회에 의석을 가진 모든 정당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위원을 선임한다.

③ 헌법개정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헌법개정특별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임시의장 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한다.

④ 헌법개정특별위원회에 대해서는 제4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.

⑤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선거 및 임기 등과 위원의 선임 및 임기에 관하여는 제40조, 제41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, 제48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.

⑥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헌법개정특별위원회의 직무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국회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헌법개정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특례) ① 이 법의 개정규정에 따라 처음 구성되는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은 제48조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이 법 시행일부터 30일 이내에 선임하여야 한다.

② 이 법의 개정규정에 따라 처음 선출되는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이 선임된 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본회의에서 선거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45조의2(헌법개정특별위원회)</u> ① <u>헌법개정 방향 논의, 헌법개정안 기초안 작성 등 헌법개정에 필요한 사항과 헌정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둔다.</u> ② <u>헌법개정특별위원회의 위원수는 50명으로 한다. 이 경우 의장은 국회에 의석을 가진 모든 정당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위원을 선임한다.</u> ③ <u>헌법개정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헌법개정특별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임시의장 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한다.</u> ④ <u>헌법개정특별위원회에 대해서는 제4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.</u> ⑤ <u>헌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선거 및 임기 등과 위원의 선임 및 임기에 관하여는 제40</u>

조, 제41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, 제48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.

⑥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헌법개정특별위원회의 직무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국회규칙으로 정한다.